■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3. 14.>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도별 지방소비세액} = \text{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합계액}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95,381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24,722
부산광역시	7,070
대구광역시	5,060
인천광역시	2,875
광주광역시	3,160
대전광역시	3,207
울산광역시	2,462
세종특별자치시	737
경기도	13,646

교육청	금액(백만원)
강원도	3,224
충청북도	3,251
충청남도	4,400
전라북도	3,632
전라남도	3,628
경상북도	5,377
경상남도	6,955
제주특별자치도	1,975